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8
------	-----

제출년월일 : 2000. 4.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 조문과 관련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불합리한 조문 정비
 - 현실 불부합한 조문 개정, 소관사무 명시 : 제4조
 - 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 제5조
- 제5조 내지 제7조를 ⇨ 제6조 내지 제8조로 정비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6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2조의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신도시개발사업 추진
2. 신도시개발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
3.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할구역내 종합행정추진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과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실·과 및 지소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및 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생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생략)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생략)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삭제)	제4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도시개발사업 추진 2. 신도시개발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 3.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할구역내 종합행정 추진
(신설)	제5조(실·과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실·과 및 지소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및 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제6조(조례규칙 등)	제7조(조례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06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

제12조의3(사업소 및 출장소) ②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별표 6]

2.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 분	장의 직급	국장 또는 국장급담당관	과장 또는 담당관
도의 출장소	3급 또는 4급	4급	5급
시·자치구의 출장소	5급 또는 6급		
읍·면의 출장소	6급		